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년 월 일 (제 회) |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 안 자 | 의회운영위원장 |
| 제안연월일 | 2020년 9월 3일 |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의회운영위원장 제안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안연월일 : 2020년 9월 3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개정이유

- 회계사, 세무사 등 전문 인력 위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증액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,
- 결산검사위원 국내 여비를 현지출장 시 지급, 그 기준을 ‘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’로 변경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 시 여비 지급 (제10조 제5항 신설)
-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3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조정(별표 2)
- 현지출장 시 여비 지급기준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별표 5 (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)에서 정하는 금액 적용(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: 붙임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수당과 여비를”을 “수당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실제비용 보상”을 “수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검사위원에 대한 실제 비용보상”을 “수당 지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휴일”을 “공휴일 및 제5항에 따른 출장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위원의 수당·여비 지급 기준

| 구 분 | 액 수 |
|-----|--|
| 수 당 | 200,000원/1일 |
| 여 비 |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[별표 5]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,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의원에 준한다. |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0조(실제비용 보상) ① 감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<u>수당과 여비</u>를 검사일수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실제비용 보상</u>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감사위원에 대한 실제 비용보상</u>은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<u>공휴일</u>을 포함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10조(실제비용 보상) ① ----- ----- <u>수당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수당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수당 지급</u>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공휴일 및 제5항에 따른 출장기간</u>-----.</p> <p>⑤ <u>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</u> 하는 때에는 별표2에 따라 <u>여비</u>를 지급한다.</p> |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매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
-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수당 및 여비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결산검사위원 선임(5인 이상 10인 이내)
- 위촉기간(20일 이내)
- 결산검사 실시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'21 | '22 | '23 | '24 | '25 | 계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계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
| 결산검사위원 수당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
|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| 1,800 | 1,800 | 1,800 | 1,800 | 1,800 | 1,800 |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매년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경비 당초예산 확보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 영 국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21년) | 2차년도 (2022년) | 3차년도 (2023년) | 4차년도 (2024년) | 5차년도 (2025년)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세 입 | | | | | | |
| | 해 | 당 | 없 | 음 | | |
| 세 출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
| 결산검사위원 수당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 40,000 |
|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| 1,800 | 1,800 | 1,800 | 1,800 | 1,800 | 1,800 |
| 재원 조달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| | | | |
| | 보조금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| | | | |
| | 지방세 | | | | |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도 비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 41,800 |
| 지방채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
| 특별회계 | | | | | | |
| 구.군비 | | | | | | |
| 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 | | | | | | |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5]

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(제33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국내 여비

| 구분 | 준용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시·도의회 의원 |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 제1호 |
| 시·군·자치구의회의 의원 | |

(비고)

1.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 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)나 도서지역(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)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·숙박비 및 식비(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2.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·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.